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지원 계획 공고(수혜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용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포천시장

1. 용자지원 개요

- 사업명 : 2023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및 시설설비구입비 등
- 지원규모 : 50억원
- 용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차등금리 적용
- 용자조건 : 협약금융기관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보조
 - 상환방법 : 3년 이내
 - 지원내용 : 3.5% ~ 4.5%의 이차지원(이자 차액 보전)
 - 일반중소기업 : 3.5%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 4.5%
 - 화재발생기업 : 4.5% (화재 발생 후 1년 이내,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 위 이차 차액 보전율은 2023년 1월 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2023년 신규 지원에 한정). 이후 이차 차액 보전율은 추후 공고되며 상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차 차액 보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이차 차액 보전율보다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대출금리 내에서 지원됨

2. 용자지원 대상

○ 지원자격(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같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3. 용자제외 대상

○ 제외대상

- 중소기업 관계법령상 중소기업 기준에 벗어난 기업
- 최근 용자금을 연속 2회 이상 지원받아 상환 후 6개월 이내에 신청기업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 용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로 함.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용자 협약은행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용자신청서(소정 양식) 및 사업계획서 1부(별지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에 한함) 1부
- 공장등록증명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원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 ※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업자나 신생기업인 경우에는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신고서(납부영수증 포함)로 갈음 - 원본으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연말정산용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또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원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 기타 증빙서류(해당되는 기업)

○ 문의사항

- 담당부서 : 포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담당자 연락처 : 031-538-2290

- 경기신용보증재단 포천지점 (☎031-543-1737 (내선103))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포천지점(031-530-8361) · 국민은행 송우지점(031-8040-7119)

· 기업은행 포천지점(031-535-9290) · 기업은행 송우지점(031-541-1963)

· 농협은행 포천시지부(031-539-8612) · 농협은행 송우지점(031-542-0981)

·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031-542-3810) · 하나은행 포천지점(031-263-1111)

· 우리은행 포천송우지점(031-541-0606)

5. 기타사항

○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에 대한 이차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협약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연체사실과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 여부, 채권보전 등을 요구할 수 있음(담보 등).

○ 자금지원 결정 후 대출협약은행을 변경할 수 없음.